

제426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6월12일(목)

장 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찰스 랭글(Charles B. Rangel) 전 미 하원의원 추모 결의안(최형두 의원·김영배 의원 등 69인 발의)(의안번호 2210700)

상정된 안건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
1. 찰스 랭글(Charles B. Rangel) 전 미 하원의원 추모 결의안(최형두 의원·김영배 의원 등 69인 발의)(의안번호 2210700) 2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국회의원 권원 통지로 인한 위원 사임 및 법률안 등 안건 회부 현황 등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김영배 의원,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찰스 랭글(Charles B. Rangel) 전 미 하원의원 추모 결의안에 대해 여야 양 간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논의한 결과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 해당 결의안을 긴급하게 상정하여 심의 의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하셨습니다.

이에 해당 안건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0시11분)

○ 위원장 김석기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결의안은 숙려기간 20일을 거쳐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으나 같은 조 단서에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의사일정을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찰스 랭글(Charles B. Rangel) 전 미 하원의원 추모 결의안을 상정하기 위해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찰스 랭글(Charles B. Rangel) 전 미 하원의원 추모 결의안(최형두 의원·김영배 의원 등 69인 발의)(의안번호 2210700)

(10시12분)

○**위원장 김석기** 의사일정 제1항 찰스 랭글(Charles B. Rangel) 전 미 하원의원 추모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영배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의원** 김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2025년 6월 10일 본 의원과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찰스 랭글(Charles B. Rangel) 전 미 하원의원 추모 결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찰스 랭글(Charles B. Rangel) 전 미 하원의원 추모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찰스 랭글 미국 전 하원의원은 6·25 한국전쟁의 참전용사이자 미국 연방하원 세입위원장을 지낸 23선의 중진 하원의원으로서 미국 의회에서 한미동맹의 강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분입니다.

그런 그가 지난 5월 26일 미국 현충일에 향년 95세로 서거하셨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찰스 랭글 전 의원의 서거를 애도하고 그간의 공로를 기리며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라는 그의 평생의 유지를 계승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과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김영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해당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외교부 소관 결의안 1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의원과 최형두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찰스 랭글(Charles B. Rangel) 전 미 하원의원 추모 결의안은 지난 5월 26일 별세한 고 찰스 랭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을 추모하려는 것으로 한미동맹의 강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고인의 서거를 애도함과 아울러 그의 공로를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 결의안은 한미동맹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지켜 온 고인의 유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한미 양국이 나아갈 길을 밝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대체토론을 실시할 순서입니다.
동 결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순서에 관계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김건 위원 김건 위원입니다.

먼저 찰스 랭글 전 의원님의 서거를 깊이 애도합니다.

존경하는 김영배 의원님과 최형두 의원님의 공동 대표발의로 여야 69인의 의원님들께서 초당적으로 찰스 랭글 전 미 하원의원을 추모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결의안은 찰스 랭글 전 의원님의 공헌과 한미동맹의 가치에 대해 국회 전체가 한마음으로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찰스 랭글 전 의원님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 단순한 외국 정치인이 아닙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불법 남침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고자 참전한 6·25 참전용사입니다. 특히 1950년 11월 평안북도 군우리·청천강 전투에서 중상을 입고도 끝까지 전선을 사수하였으며 그 용기와 헌신으로 동성훈장과 퍼플 하트를 수여받은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찰스 랭글 전 의원님을 비롯해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지신 참전용사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입니다.

전역 후에도 46년간 미 연방 하원의원으로 재직하며 한국 그리고 한미동맹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헌신을 보여 주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계획에 강력히 반대하며 주한미군의 주둔을 적극 지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는 이례적으로 한미 FTA를 적극 지지하여 양국 경제협력 증진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코리아 코커스를 창립하고 초대 공동의장을 맡아 미국의 초당적 의회 외교를 이끌었고 한국전쟁 납북자 송환, 한반도 평화통일, 이산가족 상봉 등 다수의 한반도 관련 결의안을 발의하여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와 해결 의지를 보여 준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그 공로를 높이 평가해 2007년 수교훈장 광화장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찰스 랭글 전 의원님의 삶은 한미동맹이 단순한 군사협력을 넘어 피로 맺어진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 동맹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의 초당적 헌신은 한미 양국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함을 시사합니다. 오늘날 국제질서가 요동치는 가운데 그의 발자취가 더욱 그리워지는 이유입니다.

이 결의안은 고인의 숭고한 희생과 공로에 대한 우리 국회의 합당한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의 결의안은 찰스 랭글 전 의원님의 뜻을 이어받아 한미동맹의 가치와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대한민국 국민의 강력한 의지를 미국과 국제사회에 천명하는 중대한 선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미국 사회의 미국 국민들에게도 한미동맹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좋은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이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김영배 간사님.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조금 전에 김건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적으로 찬성하고 동의를 하면서요. 당초에 5월 26일 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 대통령선거의 와중에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늦게 지금 와서 이 결의안을 상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양당에서, 양당 뿐만이 아니지요. 각 정당에서 모두 가능하면 당론으로 결의안을 추진하자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들었는데요. 그러기 위해 여러 가지 여건이 조금 맞지를 않아서 긴급하게 상정을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69명이 대표발의를 했고 오늘 외통위에 심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외통위에서 결의안이 통과된다면 차기 본회의에서는 가급적, 가능하다면 전원이 동의하고 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저희들이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주당도 거기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각 당의 원내지도부가 상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윤후덕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후덕 위원 접경지역 파주의 국회의원으로서 찰스 랭글 전 의원님께 헌신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지켜 주고 그리고 또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애써 주신 그런 염원에 감사드립니다.

연이어서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 대북 확성기 송출을 이재명 대통령님의 의지에 따라서 중단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아침에 합참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그 이후 북측에서도 어젯밤 늦게 대남 확성기 송출이 중단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인지 큰일인지 이런 일들부터 좋은 일이 일어나서 고인 찰스 랭글 의원이 염원하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더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고인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홍기원 위원 평택갑 출신 홍기원입니다.

외국 정상급도 아니고 외국의 전직 국회의원을 상대로 우리 국회에서 이렇게 추모 결의안까지, 그것도 상임위 전체 위원들의 뜻을 모아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찰스 랭글 전 의원이 한국전쟁에서 목숨까지 걸고 싸우셨고 또 46년간 미국 하원의원

으로 재직하면서 한미 관계를 위해 헌신하신 그런 뜻을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지역구에는 오산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명칭은 오산 공군기지지만 지금 평택, 예전 이름으로는 송탄시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오산 공군기지가 1952년도 한국전쟁 중에 건설이 돼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그런 지역구의 특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의 많은 주민들도 한미동맹의 강화, 중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아무튼 새 정부가 출범하는 이 즈음에 여야 위원들이 함께 한국을 위해 또 한미 관계를 위해서 헌신한 외국의 정치인에 대해서 이렇게 추모 결의안을 채택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쁘게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추가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야 간사 간 협의 및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해당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찰스 랭글(Charles B. Rangel) 전 미 하원의원 추모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 및 심사보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과 의원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권칠승 김 건 김기웅 김기현 김석기 김영배 김준형 김태호 윤후덕 이용선
이재정 인요한 차지호 한정애 홍기원

○첨가 위원(1인)

유용원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전문위원 김사우

【보고사항】

○위원 개선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2025. 6. 4.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위성락	.		

○의안 회부

대한민국 정부의 대만 유사시 불개입 촉구 결의안

(2025. 4. 29. 김준형 의원 외 22인 발의)(의안번호 2210205)

4월 30일 회부됨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 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55)

5월 7일 회부됨

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

(2025. 5. 7. 김예지 의원 등 22인 발의)(의안번호 2210377)

5월 8일 회부됨

2024회계연도 결산

(2025. 5. 30.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635)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30. 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37)

이상 2건 6월 2일 회부됨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 가입동의안

(2025. 6. 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654)

6월 4일 회부됨

찰스 랭글(Charles B. Rangel) 전 미 하원의원 추모 결의안

(2025. 6. 10. 최형두의원·김영배 의원 등 69인 발의)(의안번호 2210700)

6월 11일 회부됨

○보고서 송부

재외동포청 성과관리·자체평가 계획 및 결과 보고

(2025. 4. 23. 재외동포청 제출)

4월 23일 송부됨

2025년도 외교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2025. 4. 24. 외교부 제출)

2025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보고

(2025. 4. 24. 통일부 제출)

이상 2건 4월 24일 송부됨

재외동포청 2025년 1분기 세출예산 이·전용 명세서

(2025. 4. 29. 재외동포청 제출)

4월 29일 송부됨

국제교류기금 2025년도 제1차 운용계획 변경 제출

(2025. 5. 20. 외교부 제출)

5월 20일 송부됨

2025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

(이상 2건 2025. 5. 30.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보고

(2025. 5. 30. 감사원장 제출)

이상 3건 6월 2일 송부됨

○진정서 송부**미국의 대한민국 '민감국가' 지정 관련정부의 철회 촉구 건의문****미등록 이주아동 장기체류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참고자료로 송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일	제출일	비 고
대통령령 제35474호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2025.04.29.	2025.04.29.	
외교부예규 제287호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	2025.04.29.	2025.04.29.	
대통령령 제35475호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2025.04.30.	2025.04.30.	
대통령령 제35491호	외무공무원 임용령	2025.05.07.	2025.05.07.	
대통령령 제35492호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폐지령	2025.05.07.	2025.05.07.	
외교부훈령 제241호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계획 및 외교부 조직 개편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 등 15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2025.05.13.	2025.05.13.	
외교부예규 제288호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계획 및 외교부 조직 개편에 따른 「영사협력원 운영에 관한 지침」 등 6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예규	2025.05.13.	2025.05.13.	
외교부예규 제248호	국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	2025.05.14.	2025.05.14.	
외교부공고 제2025-76호	외무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5.15.	2025.05.15.	
외교부공고 제2025-86호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2025.05.22.	2025.05.22.	
외교부훈령 제242호	국제질병퇴치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 폐지훈령	2025.05.19.	2025.05.19.	
외교부예규 제289호	외교백서 편찬에 관한 예규	2025.05.30.	2025.05.30.	
외교부예규 제290호	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2025.06.02.	2025.06.02.	
대통령령 제35476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04.29.	2025.04.29.	

8 제426회-외교통일제1차(2025년6월12일)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일	제출일	비고
대통령령 제35557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6.02.	2025.06.05.	